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02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이인선 · 배준영 · 박충권
고동진 · 김성원 · 조지연
서지영 · 최수진 · 강선영
김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의 직위의 수가 암묵적으로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명문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를 “제41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 상임위원장 직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정당별 소속 의원 수를 정당별로 배분받은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값이 큰 정당부터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이 종료될 때까지 순서대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먼저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

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의장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를 “제41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를 “위원장의 임기”로,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65조의2제3항 전단 중 “선출”을 “선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생 략)</p> <p>② <u>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 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u></p> <p>③ <u>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u></p> <p>④ · ⑤ (생 략)</p> <p><u><신 설></u></p> <p> </p> <p><u><신 설></u></p>	<p>제41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41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 받은 정당이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정한다.</u></p> <p><u><삭 제></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 받은 정당은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u></p> <p><u>제41조의2(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 상임위원장 직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u></p> <p><u>1. 정당별 소속 의원 수를 정당</u></p>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생략)
 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제1항

별로 배분받은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값이 큰 정당부터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이 종료될 때까지 순서대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값이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먼저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의장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다.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41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의 임기-----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